#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552

발의연월일: 2020. 9. 7.

발 의 자: 한병도 · 김승원 · 김민철

이형석 · 오영환 · 이상헌

권칠승·정일영·허 영

박재호 • 박상혁 • 이원택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의 주된 산업이 위기에 처하여 지역경제여건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어 일정기간 동안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여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주된 산업이 위기를 겪는 경우 대기업이 있는 지역 외의 근접 지역의 협력업체 및 근로자들도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나, 현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과 지원은 단일 지역에 집중되어 근접 지역의 위기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인접지역을 준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여 산업위기지역에 준하는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5 신설).

#### 법률 제 호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7조의5(준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등) ① 국가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인접하고 해당 지역의 주된 산업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주된 산업과 연관되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준하는 지원이 필요한 지역(이하 "준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②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행정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준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산업통 상자원부장관에게 지정 대상 행정구역 및 지원 내용을 기재하여 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준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절차, 지원 및 지정 해제에 관하여는 제17조,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으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준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본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7조의5(준산업위기대응특별지
	역의 지정 등) ① 국가는 산업
	위기대응특별지역과 인접하고
	해당 지역의 주된 산업이 산업
	위기대응특별지역의 주된 산업
	과 연관되어 산업위기대응특별
	지역에 준하는 지원이 필요한
	지역(이하 "준산업위기대응특
	별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구청장은 관할 행정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준산업위기
	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받으려
	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게 지정 대상 행정구역 및 지
	원 내용을 기재하여 준산업위
	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신청
	<u>하여야 한다.</u>
	③ 준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절차, 지원 및 지정 해제
	에 관하여는 제17조,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특별자 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으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은 "준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으로 본다.